**계약해지 및 퇴거 통지서**

**수신인**

**주소**

**발신인**

**주소**

**대상: 임차계약 대상건물**

**제목:** 계약해지 및 건물 퇴거통보

**내용**

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의 8(차임연체와 해지)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 
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에 귀하는 0000년 00월 00일 이후 계약해지 및 퇴거 요청을 여러차례 하였으나, 현재까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본 내용증명서를 통하여 월 임대료 요청 및 퇴거 요청을 다시 하는 바입니다.

2. 0000년 00월 00일 현재 연체된 차임은 000000 원입니다.

3. 귀사는 상기 임대물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밀린 임대료를 납부하시고 상기 임대물을 원상복구 후 당사에게 명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기일내에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물 명도소송(점유금지 가처분 신청 포함)에 의한 강제집행 청구소송을 할 것이며, 소송에 필요한 모든 법적비용(변호사비용 포함)은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비용 또한 청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

5. 본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서면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판단하여 발송하는 것이오니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.

0000년 00월 00 일

발신자 (인)